

1. 개정이유

'23년 시행 예정인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방산업체의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고, 「방위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원가특례 대상으로 위임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운용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노임단가 적용방법 변경(안 제2조제19호 등)

- 1) 방산업체 평균 노임단가 대신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를 방산노임 단가로 정의

나.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 1)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을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노무량 산정업무를 위탁

다. 용역원가 계산방법 변경(안 제24조 등)

- 1) 업체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용역원가 산정

라. 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의2)

- 1) 규칙 적용대상에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추가
- 2)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산물자(防産物資)”를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물자와”를 “물자,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방산노임단가”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산정을 위한 단가로서”를 ““방산노임단가”란”으로, “단위당 가격을”을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원가계산기준) ① 방산원가대상물자는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중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부속품에 대해서는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한다.

제21조제2항 중 “계약이행기간 중에 방산노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을 “방산노임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연도와 적용연도의 차이가 있거나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기관 또는 단체를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노무량의 산정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역: 100분의 6

제2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역: 100분의 8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제5장에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31조(경비) ①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 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u>방산물자(防産物資)</u> 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협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u>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u>물자와</u>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1. ----- ----- <u>물자,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및</u> ----- ----- -----.		
2. ~ 18. (생략)		2. ~ 18. (현행과 같음)		
19. “ <u>방산노임단가</u> ”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산정을 위한 <u>단가</u> 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		19. “ <u>방산노임단가</u> ”란 ----- ----- ----- ----- -----		

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20. (생략)

<신설>

제21조(직접노무비) ① (생략)

② 계약이행기간 중에 방산노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산
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직

----- 방산분
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를 -
--.

20.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원가계산기준) ① 방산
원가대상물자는 제2장부터 제7
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
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
품 중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연구 또
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
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부속품
에 대해서는 제2장부터 제7장까
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위사업
청장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한다.

제21조(직접노무비)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산노임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연도와 적용연도의 차
이가 있거나 계약이행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인 -----

접노무비를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생 략)

②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 2.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 계산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기관 또는 단체를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노무량의 산정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용역: 100분의 6

4. (현행과 같음)

③ -----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3. 용역: 100분의 8

4. (현행과 같음)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신 설>

<신 설>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31조(경비) ①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신 설>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부
칙

제2조(방산노임단가에 관한 특례)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
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
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
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
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
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다.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부
칙

<삭 제>

제16조제1항제4호, 제21조 및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산정할 때 2024년까지는 방산노임단가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업체별 노임단가를 각각 100분의 50씩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한다.